

##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제출일	접수일	처리기간(30일)
------	-----	-----	-----------

제출방법 [ ]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[ ] 서면

신 청 인	상호(명칭)	담당자 정보	성명
	사업자등록번호		연락처
	대표자 성명		전자우편 주소
취급시설 소재지			
(최종) 적합통보 번호		(최종) 적합통보 일자	
영업허가 대상 여부	[ ] 영업자 [ ] 비영업자		

변경 [ ] 사업장 구분 변경: 변경 전 ( ) 군 사업장, 변경 후 ( ) 군 사업장

사항 [ ] 그 밖의 사유( )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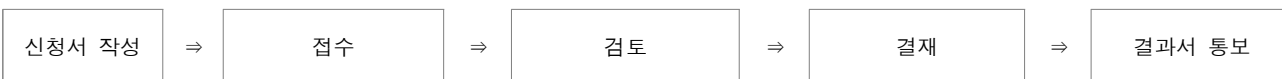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###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

첨부 서류	1.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.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·제출에 관한 자료(공동으로 비상대응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	--	-----------

### 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신청인

화학물질안전원

<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상세내용>

장외영향평가서 민원번호	결과번호	적합날짜	위험도

위해관리계획서 민원번호	결과번호	적합날짜

※ 해당 없을 경우 “해당없음” 으로 기재합니다.

<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이력>

적합 결과번호	사업장 구분 (1군/2군)	위험도	상세내용	적합통보일

<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사항 상세내용>

변경구분	변경 전	변경 후
품목추가		
시설추가		
취급저장량 증가		